학교 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및「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전주자연초등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학교 규칙)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근거한다.

제3조 (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휴업" 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②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 2 장 명칭 및 위치

제4조 (명칭)

우리 학교는 전주자연초등학교라 칭한다.

제5조 (위치)

우리 학교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세병로 150에 둔다.

제 3 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6조 (수업연한)

우리 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에 관하여 전주자연초등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학년) 학년은 1~6학년으로 하며, 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제8조 (학기)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 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 (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5월 1일
3. 여름방학 :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
4. 겨울방학 :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
5. 학년말 방학 : 당해 학년도 교육과정운영계획에 의한다.
6. 주5일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업일
7. 학교장 재량휴업일

② 제1항제2호의 개교기념일이 토요일이나 관공서의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다음 평일을 휴업일로 할 수 있다.

③ 휴업일은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휴업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지체 없이 보고한다.

⑤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경우 휴업일에도 학생을 등교시킬 수 있다.

제 4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10조 (학급수)

학급편제는 당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 수로 한다.

제11조 (학생정원)

① 학생 정원은 당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생정원으로 한다.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 5 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과정수료의 인정.졸업

제12조(교육과정) ①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전라북도교육감이 정한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한다.

② 기본 교과는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영어)와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로 한다.

③ 특수학급과 관련하여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을 작성·운영하고, 이를 학교수준교육과정으로 인정한다.

제13조(수업)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학교장이 정

한다.

②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하거나, 인근학교와 협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교외체험학습) ①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학생 개인의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외체험학습을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교외체험학습의 유형·방법·기간·횟수 등은 전라북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추진지침과 운영매뉴얼의 내용을 따른다.

③ 신청단위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학교장 허가에 의해 반일(4시간)도 운영가능. 반일(4시간) 2회 사용시 1일로 환산

제15조(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활동) ①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에 방과후학교(돌봄교실 포함) 운영 등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방과후학교(돌봄교실 포함) 운영에 관한 세부 계획은 전라북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운영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한다.

제16조(수업일수) ① 매 학년도의 수업일수는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법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일수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학년도의 수업일수를 정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경우 제출된 증빙서류에 따라 해당 학년의 수업일수를 산정한다.

④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체육대회,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등의 학교 행사 개최 시 수업일수로 인정할 수 있다.

제17조(평가) ①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8조(과정 수료의 인정) ①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②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 수료 및 진급을 인정한다.

제19조(졸업)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졸업을 인정하고 졸업장을 준다.

제20조(학년제)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

제 6 장　입학 . 전학 . 휴학 . 취학유예

제21조 (입학자격)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우리 학교 학구내 아동으로서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자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외국민의 자녀

제22조 (입학시기 및 조기입학)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학생의 재취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③ 조기입학을 원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2008.05.27공포)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을 신청해야 한다.

제23조 (취학유예 및 휴학)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시행개정(2008.5.27공포)에 따라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입학 연기를 신청해야 한다.

제24조 (출석 독촉.경고 및 통보)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보호자)에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한다.

② 독촉 경고 후 7일이 경과하여 2회 이상 독촉 경고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급 담임은 가정 방문을 통해 확인한다.

제25조 (전.입학)

① 당해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은 매년 동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 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출을 추천할 수 있다.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신고증을 제출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입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26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①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되 학교의 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장기간 국외에서 거주하는 아동에 대하여 3개월 이상 결석할 경우 정원 외 관리를 할 수 있다.

제27조 (재입학. 편입학)

① 학교의 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입학 또는 편입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 7 장 조기진급·조기졸업·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제28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① 재능이 우수한 학생은 정해진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고, 이수평가위원회의 인정을 받아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② 조기진급이란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함을 말하며, 조기졸업이란 5학년 과정을 이수하고 바로 졸업하는 것을 말한다.

제29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기준)「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및「전라북도교육청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 학생을 선정할 경우, 해당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1·2학년은 국어, 수학, 통합교과 중 슬기로운 생활 영역)의 학업성취도가 우수한 학생.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IQ)가 140 이상인 학생.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 학교장의 추천으로 참가하여 3등 이내 입상한 학생이나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학생.

제30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①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 선정은 매 학년 초 1개월(3월 말) 이내에 한다.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학년 초 2개월(4월 말) 이내에 한다.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선정기준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면 학교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④ 학교장이 제3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⑤ 조기진급·졸업대상자가 제4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⑥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1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①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8호, 2013.1.1.)에 따라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경우, 해당 학생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학생.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학생.

③ 학교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2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7조제4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제28조제3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평가위원회에는 교사 외에 학부모나 교육 관련 전문가가 포함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⑤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 기타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제29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② 제29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 8 장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제34조 (수익자부담경비의 징수)

수익자부담경비(현장학습비, 수학여행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청소년단체 활동비, 급식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징수한다.

제 9 장 학생 자치활동

제35조(자치활동 보장) ① 학생의 자치능력 배양과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위한 학생자치활동(이하 “자치활동”이라 한다)은 적극적으로 보장된다.

② 모든 학생은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무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동아리를 조직하고자 할 경우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는다.

⑥ 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제36조(자치활동 분야) ① 자치활동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 조직 및 운영
2. 학예, 체육, 특기·적성에 관한 활동
3. 정서함양과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4. 각종 봉사활동

② 학생회 조직·운영 등 기타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0 장 학생 포상

제37조(포상) 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학생, 학교에 공로가 있는 학생, 자신의 소질개발을 위해 노력한 학생 등에 대하여 포상한다.

② 포상의 종류, 포상의 대상과 방법, 포상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1 장 학교생활규정

제38조(학교생활규정) 학생 인권, 학생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2 장 장애인 차별 금지

제39조(차별금지) ① 학교장은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학교장은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류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장은 취업 및 진로교육에 대한 정복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학교장은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가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 제공

제41조(개인정보보호) ①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제42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3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제44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학생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13 장 학교운영위원회

제45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31조에서 34조, 영 58조에서 60조의2, 63조에서 6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4 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6조(목적) ① 이 규칙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5조 제7항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15 장 학교규칙 제·개정

제47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규정개정심의위원회”로 ”(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학생 위원은 전체의 40%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 임기는 해당 학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단, 다음 학년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는 새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와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 사람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개정안의 발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학칙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학칙의 개정을 요구할 때.
2. 재직 교원의 과반수가 학칙의 개정을 요구할 때.
3. 학부모 대표가 학칙의 개정을 요구할 때.
4. 학생회 대표가 학칙의 개정을 요구할 때.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학교장이 학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상시개정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학기말 또는 새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으로 하며, 제1항 제5호에 따른 발의 시기는 예외로 한다.

제49조(의견 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를 하거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50조(심의 절차)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심의결과를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③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확정하여 공포한다. 이 경우 심의결과에 대한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51조(안내 및 연수) ① 개정된 학칙을 학교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② 개정된 학칙에 대해서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